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2025. 12. 18.(목)



경제건설위원회



■ 안 건 : 16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	7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10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7.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20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26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11.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7
12.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3
13.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46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9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3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7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61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27일
- 제 출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5. 12. 8.)

## 2. 제안사유

-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폐농약에서 영농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여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관련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4. 관계법령

-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현행 ‘폐농약 및 농약용기류’에서 폐비닐, 폐농약과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용자재를 포함한 ‘영농폐기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고, 농촌지역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조에 영농폐기물, 폐농약,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4조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안 제5조에 예산지원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사무의 위탁 규정을 두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 포상관련 규정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 영농활동에 사용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처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처리 편의성을 높이고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 영농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단위: 연간, 톤)

구분	발생량	수거·처리량	재활용량
폐비닐(LDPE, HDPE)	271,721	200,846	161,193
기타 폐비닐(PVC, EVA, PO)	18,297	58	
폐농약 용기류	73,822,258	81,475,076	81,323,910

<2023년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조사(2024.12.17.), KOSIS 발췌>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신동윤 위원: 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우리 군이 수거·처리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영농폐기물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 여부 및 그에 수반되는 예산 투입에 대해 집행기관에 질문함.
- ☞ 청소자원과장(김태경): 현재 농업용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수거·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영농폐기물에 대해 수거·처리 또는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62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27일
- 제 출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5. 12. 8.)

## 2. 제안사유

-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 4.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5. 검토의견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로 각종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자원 낭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확산이 필요한 현 시점에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본 조례의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단체장에게 관련 시책 수립의 의무와 대군민 홍보의 책무도 부여 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 시 관계 전문가와 공공기관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1회용품 사용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단체장에게도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폭넓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사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홍보사업을 비롯한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의 폐기물 감축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지역 상점, 주민 참여를 포괄하는 지역 단위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 탄소배출 저감, 주민의 환경의식 향상, 친환경 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본 조례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신동윤 위원: 미래를 위한 환경 정책으로 의미가 있으며, 체육대회와 같은 우리 군 주최·주관의 각종 행사에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함.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63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27일
-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5. 12. 8.)

## 2. 제안사유

- 소상공인이 겪는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전문상담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정신 건강 회복과 지속 가능한 영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4.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 5. 검토의견

- 최근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물가·내수 부진이 지속되어 업종 전반에서 매출 감소와 함께 임대료·인건비·원재료비의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역 상권 약화도 겹쳐 폐업 위험이 증가하고,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와 재정적 압박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활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를 따름으로써 관련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여 법규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명시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안 제6조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공인단체, 기타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이 필수이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7조에 비밀누설 금지 규정은 심리상담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적이며, 특히 민간 위탁 시 상담 정보의 보안 관리 기준 마련이 중요하므로 꼭 필요한 조문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8조는 사무의 위탁 규정을 두어 심리상담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과중한 경쟁, 장시간 노동 등으로 정신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정책의 범위를 경제적 지원에서 심리·정신 건강 지원으로 확장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트레스 해소, 경영 의욕 회복, 사업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64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27일
-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5. 12. 8.)

## 2. 제안사유

-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4.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수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 제4조 및 제5조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 학교장과의 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약 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생각합니다.
  - 안 제7조에 포상 규정을 두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써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체육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공공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행정과 교육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의 체육 활동 접근성 향상, 학생·지역 간 소통 확대, 지역 건강 수준 제고,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학교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신달호 위원: 본 조례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학생들을 위해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65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27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5. 12. 8.)

## 2.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발생한 농업재해 중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 피해발생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과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 4. 관계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재해의 구호 및 복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정부 보조 및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기여하고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와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단체장에게 피해복구지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 제4조에 복구비 지원 대상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적절한 입법 조치로 생각합니다.
  - 안 제6조와 제7조에 피해발생 신고 절차와 복구지원금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대응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별표]에 재난지수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3단계로 세분화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재난등급(재난지수)별 재난(복구)지원금 기준 비교

(단위: 원)

구분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비 고
국고지원	1	49,500이상	50,000,000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2~99등급	생략	생략	
	100	300~500	500,000	
국고지원 제외 (달성군)	-	200이상~300미만	3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표]
	-	100이상~200미만	200,000	
	-	50이상~100미만	100,000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심화로 농업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성 강화와 지역농업 생산기반 보호 효과가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박영동 위원: 재난지수 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농업재해 보상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45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5. 12. 8.)

## 2. 제안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령 등의 경쟁 제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한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문 제목 변경(안 제15조)
- 경쟁 제한·차별적 규제 삭제(안 제15조제1항)

## 4. 관계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령 등의 경쟁제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한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의무 우선 구매 제도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구분	관련법률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여성기업 생산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사회적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혁신 인증 신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현행 조례 제15조의 관내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규정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진입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지방자치법 제2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을 위배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 제4조(규제 법정주의)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 경기 활성화라는 중요한 책무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우수한 지역 기업의 생산품을 우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에 대한 판로 개척을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46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5. 12. 8.)

## 2. 제안사유

-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2026. 1. ~ 자금 소진 시
  - 출연금액: 10억 원(출연 시 보증 규모 120억 원)
  - 내 용: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불황 지속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 ○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5. 12.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협약 체결 : 2025. 12.
- 사업시행 : 2026. 1. ~ 자금 소진 시

##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5. 검토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 접근성이 낮아 고금리·고물가 지속상황에 자금 운용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저금리·융통성 있는 자금 공급은 지역경제의 연쇄적 위축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지역 경기침체 대응에도 도움이 되며, 소상공인은 지역 고용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들의 자금난 해소는 지역의 고용 유지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출연계획안의 10억 원 출연금은 기금 운용을 통해 120억 원 규모의 융자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대비 효과성이 높은 정책수단이라고 판단되어 본 출연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신용도 기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실제로 자금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이 배제되어 지원 효과의 편중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부서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밀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5년 추진실적

(2025. 9. 30. 기준)

구분	보증규모	건 수	금액
계	120억 원	546건	11,970백만 원
고 신 용(1~2등급)	60억 원	238건	5,980백만 원
중 신 용(3~7등급)	58억 원	288건	5,800백만 원
<b>저 신 용(6~9등급)</b>	<b>2억 원</b>	<b>20건</b>	<b>190백만 원</b>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광동환 위원장: 소상공인들의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 ☞ 경제산업과장(배경옥): 소상공인들의 자금 필요시기가 1/4분기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도에는 상반기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47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5. 12. 8.)

## 2. 제안사유

- 임금 및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처리업무를 원활이 수행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제7조제1항 중 별표1)

구 분	수 수 료	
	현 행	개 정
기본요금 (0.75㎡까지)	15,280원	16,960원
초과요금 (매0.1㎡마다)	1,680원	1,860원

## 4. 관계법령

- 「하수도법」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임금 및 물가의 상승으로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처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수집·운반 업체 대부분은 영세하여 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경영난 악화에 따른 정화조 부실 청소,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며 특히, 우리 군은 넓은 행정구역, 적은 정화조 수, 서부하수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로 인해 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이 타 구에 비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분뇨처리 의무 대행이라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른 수수료 2가지 인상안 중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2안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1안과 비교했을 때 인상율이 낮고 정화조 용량에 따른 인상 폭도 일정하여 군민 부담이 다소 경감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에 따른 인상안 비교

(단위: 원)

구분	현행			인상(안)			단가 인상률	비고
	기본 (750ℓ)	초과 (100ℓ당)	단가 (1t당)	기본 (750ℓ)	초과 (100ℓ당)	단가 (1t당)		
1안	15,280	1,680	19,480	17,790	2,330	23,615	21.2%	업체 요구안
2안				16,960	1,860	21,610	11%	7개 구 동일

- 아울러 대구시 내 7개 구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안으로 2026년 1월 인상 예정이므로 대구시내 수수료를 일치하여 형평성과 행정 안정성 측면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현황

(단위: 원)

구 분	2013년 1월	2016년 1월	2019년 3월	2023년 1월
기본요금	11,720	13,380	13,530	15,280
초과요금	1,140	1,250	1,490	1,680
단가(t)	14,570	16,505	17,255	19,480
인상율	8.52%	11.67%	5.40%	12.89%
비 고	<b>수집·운반 1건 당 재정지원금(3,400원) 지급</b>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김보경 위원: 본 일부개정안 대로 대구시 8개 구·군(군위군 제외)이 같이 인상한다면 현행 우리군이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유지가 되는지 질의함.
- ☞ 환경과장(이종순): 금번 인상안은 인상율을 대구시 8개 구·군(군위군 제외)이 함께 일치되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상 후에도 각 구군별 수수료 요금의 차이가 있으며, 우리 군은 군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지원금은 계속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48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5. 12. 8.)

## 2. 제안사유

- 고령화와 소규모·영세 경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대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군수 등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농민수당 지급, 지급대상자와 지급제외(안 제5조 ~ 안 제6조)
-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 중지 및 환수(안 제7조 ~ 안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평가(안 제9조 ~ 안 제14조)

## 4.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 검토의견

-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자재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농업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민의 경영안정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발전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코자, 그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농민수당의 지급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정의하여 관련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여 법규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단체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4조는 농민수당의 지급 방법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 제5조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시도와의 지급 대상 요건을 비교해 볼 때, 특광역시는 대부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광역자치단체 및 대구시 지급대상 비교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거주요건	비 고
대구 군위군	경영체 등록자	2인 이상 경영체 농가 동일 지급	1년 이상 거주	
인천	직불금 수령자	2인 이상 경영체 농가 동일 지급	2년 이상 거주	
울산	직불금 수령자	2인 이상 경영체 농가 동일 지급	당해 연도 거주	
광주	직불금 수령자	2인 이상 경영체 농가 동일 지급	1년 이상 거주	
부산	직불금 수령자	2인 이상 경영체 농가 동일 지급	당해 연도 거주	
대전	직불금 수령자	2인 이상 경영체 농가 동일 지급	1년 이상 거주	
대구	직불금 수령자	2인 이상 경영체 농가 동일 지급	1년 이상 거주	시 조례 내용 (’20.7.부결)

- 안 제7조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농민수당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함을 명시하고, 그밖에 지급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시행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안 제8조는 지급 중지와 환수에 관해 규정하여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생각합니다.

-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주요 심의 사항,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식량안보, 농촌공동체 유지 등의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 법령은 없으나 자치사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대구광역시에서는 군위군만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제3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타 지자체와 달리 시비 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음으로 우리군의 재정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대구시의회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 처리 현황

회의명	제318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일자	2025년7월22일(화)
안건명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자	김원규 등 14인 발의 (권기훈·김정옥·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동욱·이영애·정일균·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처리결과	본 안건은 <b>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b>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1명)

※ 전국 광역시·도별 농민수당 지급현황

구분	지급금액	지급대상	시행연도	재정부담
부산	60만원/연	농어업인	2025	시 60%, 구·군 40%
인천	60만원/연	농어업인	2024	시 70%, 구·군 30%
광주	60만원/연	농업인	2023	시 80%, 구·군 20%
대전	제도마련완료	-	미정	2026년 예산 확보 중
울산	60만원/연	농어업인	2023	시 80%, 구·군 20%
세종	60만원/연	농업인	2023	시 100%
경기	60만원/연	농업인(개인)	2021	도 50%, 시·군 50%
강원	70만원/연	농어가	2021	도 60%, 시·군 40%
충북	60만원/연	농가	2022	도 40%, 시·군 60%
충남	80만원/연	농어임가	2020	도 40%, 시·군 60%
전북	60만원/연	농가	2020	도 40%, 시·군 60%
전남	60만원/연	농어가	2020	도 40%, 시·군 60%
경북	60만원/연	농어임가	2022	도 40%, 시·군 60%
경남	30만원/연	농어가	2022	도 40%, 시·군 60%
제주	40만원/연	농업인(개인)	2022	도 100%

## “해남 농민수당, 지역경제에 활력… 청년 유입”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인에게 연 6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현금 대신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거뒀다.

농민수당이 효과를 거두자 전남도는 2020년 바로 도입했다. 강원도, 충북도,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급 금액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개인당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와 현금이 혼재돼 있다.

농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농업인 유입에 기여한다. 해남군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지역화폐 사용액이 약 2배 증가했고, 소상공인 매출도 평균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농업인 유입도 증가했다. 해남군에서는 농민수당을 시행한 뒤 청년 농업인 등록 건수가 15% 늘었다. 강원도와 충북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 농업인의 창업 및 정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민수당이 농업 소득 안정의 기반이 되며, 도시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하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친환경 농법 농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민수당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김보경 위원: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년 대구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는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임. 매년 38억 원 상당의 재원이 군비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우리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전국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원 전부를 부담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대구시와 협의하여 타 광역시 수준의 시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74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5. 12. 8.)

## 2. 제안사유

- 소힘겨루기대회가 동물학대 논란 등으로 인해 2026년 미개최됨에 따라 대회 참여를 목적으로 사육하던 힘겨루기소 농가들이 사육기반을 상실하여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힘겨루기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 민속문화 계승과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민속 투우 육성을 위한 사업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4호)

## 4. 관계법령

- 「축산법」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힘겨루기소 사육 농가들이 소힘겨루기대회의 미개최에 따라 사육 기반을 상실하여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힘겨루기소 육성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과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제14호에 소힘겨루기 소 육성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사료비, 대회 출전비, 입상장려금을 지원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 소싸움대회는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 보전 및 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관련 농가 소득 보호, 전통문화 보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동물복지 인식 강화에 따른 사회적 논란 가능성, 향후 법·정책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등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동물보호법

###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 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④ 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일부개정]

제3조(민속 소싸움 경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으로 한다.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구에 관한 청원

○ 청원개요

- 청 원 인: 송\*\*
- 동 의 자: 52,757명
- 동의기간: 2025. 7. 1. ~ 2025. 7. 31.
- 청원내용
  - 소싸움 금지를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현행 조례 전면 폐지
  - 소싸움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 중단
  - 관련 행사 주최 지자체 및 단체에 대한 감사 및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요청
  - 소싸움에서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지원책 마련

○ 소관위 심사개요

-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 부 일: 2025. 7. 17.
- 상 정 일: 2025. 9. 24.
- 회 의 결 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의안개요

- 의 안 번 호: 2214449
- 제 안 일: 2025. 11. 21.
- 제 안 자: 손솔의원 등 11인
- 회 부 일: 2025. 11. 24.
-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 과 사 항: **입법예고 중** (2025. 11. 26. ~ 2025. 12. 10.)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49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2025. 12. 9.)

## 2. 제안사유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시행이 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2023년 달성군의회 제309회 제2차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총 37개소에 대한 보고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이 되지 아니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0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 검토의견

-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 가능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의회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3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로 총 37개소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37개소)

(2025. 10. 31. 기준)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b>총 계</b>		<b>37</b>	<b>82,786</b>	
<b>도 로</b>	<b>계</b>	<b>33</b>	<b>35,391</b>	
	중 로	1	7,911	논공읍 1개소
	소 로	32	27,480	화원읍 1개소 논공읍 3개소 다사읍 5개소 옥포읍 6개소 가창면 11개소 하빈면 6개소
<b>주차장</b>	<b>노외주차장</b>	<b>1</b>	<b>213</b>	안박실주차장(가창)
<b>공 원</b>	<b>계</b>	<b>3</b>	<b>47,182</b>	
	소공원	1	362	안박실공원(가창)
	문화공원	2	46,820	도동공원(구지) 굿밭골공원(유가)

○ 이 중 ▲관리번호 2번 중로3-313 논공읍 삼리리 506-7번지에서 논공읍 위천리 158-5번지에 이르는 폭12m, 연장 623m 도로, ▲관리번호 3번 소로3-논76 논공읍 위천리 136-8번지에서 논공읍 삼리리 539번지에 이르는 폭6m, 연장39m 도로, ▲관리번호 4번 소로2-논108 논공읍 위천리 142-10번지에서 논공읍 삼리리 540번지에 이르는 폭8m, 연장 325m 도로, ▲관리번호 117번 소로2-논107 논공읍 삼리리 517-3번지에서 논공읍 삼리리 516-16번지에 이르는 폭8m, 연장 305m 도로 이상 4개소의 도로 시설은 광주대구선 고속국도 12호 논공휴게소(대구방향) 남측과 동측에 위치하였으며, 2005. 12. 29. 시설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시행하지 않았으며 2025년 실효 예정입니다.

- 그 외 29개소의 도로와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는 취약지구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결정된 시설 또는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로 시설 결정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67개소, 주차장 30개소, 궤도 1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12개소, 연구시설 1개소로 총 230개소입니다.
-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미집행시설 총 230개소 중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단계에 183개소, 1,027억 원, 2029년부터 2031년 이후까지 2단계에 47개소, 4,59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미집행 시설의 총 사업비는 5,617억 원입니다.

## 2026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단위 : 천㎡, 억 원)

구분	합 계			2026년 ~ 2028년 (1단계)			2029년 ~ 2031년 이후 (2단계)			비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총 계	230	780	5,617	182	266	1,027	48	514	4,590	
도 로	167	263	1,032	127	177	671	40	85	361	
주 차 장	30	16	67	30	16	67	-	-	-	
궤 도	1	47	301	-	-	-	1	47	301	비슬산 케이블카
공 원	19	64	368	16	16	213	3	47	155	
녹 지	12	58	86	10	56	76	2	3	10	
연구시설	1	332	3,763	-	-	-	1	332	3,763	DGIST (국·시비)

- 미집행시설 총 230개소에 대한 준치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준치 결정함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사업의 예산 편성, 투자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김보경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금년 실효되는 사업의 경우 실효 후 지구단위계획이나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상 예상되는 여파에 대해 질의
- ☞ 도시정책과장(김보규): 계획시설의 실효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으나, 금년 실효되는 도로 시설의 경우 주변 취약지역이 없고 시설 결정 후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을 만큼 사업성이 부족한 시설이며, 추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효되는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7. 심사결과: ‘찬성’의견 제시

#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50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2025. 12. 9.)

## 2. 제안사유

-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 위탁(재계약)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구 분	소 재 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옥포읍 옥포로 3	면적 66㎡	4명
천내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화원읍 비슬로 520길 17-1 (4층)	면적 304㎡	4명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기획·운영
  - 도시재생 거점시설(공동이용시설) 관리
-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사무국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4명	1명	1명	2명
천내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4명	1명	1명	2명

- 위탁기간: 2년(2026. 1. 1. ~ 2027. 12. 31.)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성과평가 결과: 적정(평균 80.1점)

####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 검토의견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은 주민 조직화, 도시재생 계획 실행, 국비 공모 준비 등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탁운영의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사업 추진에 따른 노하우가 유지되어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공백·혼선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현장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며 현 위탁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 평균 80.1점으로 위탁성과도 양호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는 주민 참여, 공동체 형성 등의 정성적 요소가 많아 객관적 성과 측정이 어려우므로,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한 성과 측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신달호 위원: 현재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별도의 현장지원센터 없이 그 역할을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설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75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2025. 12. 9.)

## 2. 제안사유

- 2026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금3,943백만 원
  - (재)달성문화재단 기관운영비: 금1,238백만 원
  - (재)달성문화재단 자체사업비: 금2,705백만 원

##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문화예술진흥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5. 검토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수탁받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026년 출연금은 총 3,943백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요구 내역

(단위: 백 만원)

구 분	사업기간	요구액
계		3,943
인력운영비	1~12월	617
기본경비	1~12월	621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400
달성 100대 피아노(시비)	9월	10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9~10월	550
달천예술창작공간운영	1~12월	200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1~12월	125
예술자치구역	1~12월	15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150
달성 스토리텔링	1~12월	160
YES! 키즈존	5~10월	350
문화기획지원	1~12월	240
달성문화교차로	1~12월	200
참꽃갤러리 운영	1~12월	80

-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 문화복지 확대, 문화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출연이 필수적이므로 본 출연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출연금은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재정 지원인 만큼,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우리 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의 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특히 사업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화복지 확대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력·조직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출연금 사용 내역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51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2025. 12. 9.)

## 2. 제안사유

-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 위탁(재계약)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달성문화회관	현풍읍 현풍동로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10,015㎡</li> <li>• 건축물: 2,172㎡ (지하1층, 지상2층)</li> </ul>	6명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 회관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회관 건물 및 부속시설물 일체의 유지, 보수, 환경정비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회관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회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와 "원장"이 협의한 사항

○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문화원장	사무국장	관리담당	간 사
인원	6명	1명	1명	2명	2명

- 위탁기간: 3년(2026. 1. 1. ~ 2028. 12. 31.)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의결
- 성과평가 결과: 적정(평균 80.5점)

####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5. 검토의견

- 달성군 문화회관의 운영은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기획, 무대기술, 시설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써 해당 사무의 민간 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현행 수탁기관인 달성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과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1994년 설립 한 이래 지역문화정책과 연계된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본 문화회관의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재계약)은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회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며 현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 평균 80.5점으로 성과도 양호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문화회관의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는 정량적 성과뿐 아니라 질적 만족도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문화회관은 단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지역 문화생태계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지표와 주민 참여도 관련 지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김보경 위원: 현풍읍에 소재한 달성군 문화회관의 시설 현판에 현재는 수탁기관인 ‘달성문화원’으로 표기되어 있음. 소관 부서에서는 정확한 시설명 표기를 검토하기 바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52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2025. 12. 9.)

## 2. 제안사유

-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 위탁(재계약)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달성 문화도시센터	화원읍 성천로 5, 별관7층	322.79㎡	11명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달성 문화도시센터 운영
  -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
  - 그 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센터 관리재산
  - 권역별 커뮤니티 공간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소재지		구분	면적(㎡)	
화원읍 천내리	454-4	토지(대지)	618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화원권역)
		건물	1185.78	
다사읍 매곡리	719-19	토지(대지)	295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다사·하빈권역)
		건물	202.54	

○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센터장	팀장	매니저	공무원(파견)
인원	11명	1명	2명	7명	1명

- 위탁기간: 2년(2026. 3. 1. ~ 2028. 2. 29.)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의결
- 성과평가: 문화도시 대상 2023년도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우수도시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별도평가하는 위탁사무에 해당

####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 5. 검토의견

-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문화 자원 발굴, 주민 참여 프로젝트 운영,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등 전문적인 기획과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센터의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현행 수탁기관인 (재)달성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추진과 제4차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이해도, 사업관리 역량, 운영 노하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단체, 예술가, 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 기반의 사업 추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도시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 성과 평가 결과 ‘2023년 우수도시’, ‘2024년 우수도시’로 성과도 우수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신동윤 위원: 문화도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문화도시 거점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함.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53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 상정 및 의결: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2025. 12. 9.)

## 2. 제안사유

-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가 없으며,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실효성이 없음에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를 폐지함.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종교인 상호간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달성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달성군수가 제출하여 제2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2015. 11. 10. 시행된 조례입니다.
-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관내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의 각 종단 또는 그 신도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회가 추진하는 각 종교인의 행사, 사회교육사업, 사회복지 및 각종 봉사사업,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보호사업 등 달성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조례 시행 후 2016년 9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 평가 결과 지원 중단 판정이 나왔으며,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협의회 보조금 지원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사업내용
2014	21,000	20,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활절 행사(달걀 나누기),</li> <li>• 성탄 트리 점등식(팸플릿 제작 등)</li> <li>• 종교인 음악회(10. 30.)</li> </ul>
2015	21,000	1,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활절 행사(달걀 나누기),</li> <li>• 연등 점등식 행사 지원</li> </ul>

##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신동윤 위원: 향후 본 조례안에 근거한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이나 각 종교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 질의.
- ☞ 관광과장(황은수): 본 조례에 따른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며, 본 조례안이 폐지되어도 각 종교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필요할 경우 각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